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55

발의연월일: 2022. 9. 6.

발 의 자: 김수흥 · 기동민 · 김교흥

김민석 · 김주영 · 맹성규

안규백 • 이명수 • 정일영

최인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민·중산층의 주택마련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,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·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최근 코로나-19의 장기화,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·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조세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제2항 및 제87조의2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2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정 아 혂 개 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생 략) 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 용근로자는 제외한다)로서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가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------2027년 12월 31일-----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에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청 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. 제 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 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)의 100분의 40에 상 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 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 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 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
③ ~ ① (생 략) ③ ~ ① (현행과 같음) 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 대한 비과세) -----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 가입한 2027년 12월 31일-----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 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 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·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1. ~ 3. (생 략)